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Contents

- 01 납세자권리헌장
- 02 사업자등록 안내
- 03 홈택스 이용 방법
- 04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 0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 06 부가가치세 안내
- 07 종합소득세 안내
- 08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09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10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 11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12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13 불복청구 절차
- 14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15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 16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02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형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
|--|---|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3일 이내(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8일 이내

☑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허가·신고·등록 대상 여부 확인: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 기업 민원 → 기업 민원 행정 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 인허가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03 |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란?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 회원 가입
 -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한 회원 가입
 - ② 세무서 방문 가입 :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

-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2만원, 법인세 2만원)

✔ 홈택스를 통한 세금 납부

- 은행 방문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MyN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각종 세무정보(세금 신고·납부, 우편 발송된 고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

✔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홈택스 앱]

국세증명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발급 신청	▶ 증명 열람 ▶ 팩스 전송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12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 * 사실 여부 검토 필요(신청 후 3 근무시간 내 처리)	
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신청	▶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 *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등 제외), 사업장 소재지(자가 → 자가만), 연락처 등	
휴·폐업 신고	▶ 즉시 휴·폐업 신고 가능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재개업 신고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방문민원 결과 조회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의 세무서 방문 접수분에 대한 진행 상황 조회(7일간)	
민원신청 결과 조회	▶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된 사무가 모두 조회(7일간)	
민원증명 원본 확인	▶ 모바일에서 국세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홈택스 앱) 사업자등록증 : 모바일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하고 '팩스 발송' (모바일 민원실 우측)

04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www.nts.go.kr



국세증명	온라인 발급 시간	발급 창구						
		홈택스	모바일	무인 민원	정부 24	민원 우편	어디 서나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연중 24시간							
④ 납세증명서 ⑤ 납부내역증명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연중 08:00 ~ 22:00	○	○	○	○	○	○	
⑩ 표준재무제표증명		○	○	×	○	○	○	
⑪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 모범납세자증명 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연중 24시간	○	○	○	○	○	○	
⑭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	○	○	○	
⑮ 사실 증명	유 형							
	(1) 신고사실 없음				○	○	○	
	(2)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 연중 09:00 ~ 24:00						
	(3) 체납내역							
	(4)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5) 사업자등록변경내역							
	(6) 대표자등록내역		○	○	×			
	(7) 공동사업자내역							
	(8)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발급] 근무시간 3시간 내 (신청 후)				×	×	×
	(9) 전용계좌개설여부							
	(10)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1)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12) 총사업자등록내역								

※ 영문 증명은 ① ~ ⑧, ⑩, ⑬ 가능(방문, 홈택스, 어디서나 민원, 모바일에서만 신청·발급)

발급 창구	이용 방법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에서 신청	① ~ ④, ⑮는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 로그인으로 발급 가능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앱) → 증명 발급」에서 신청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서비스 → 국세증명」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식 후 신청	
정부24	「정부24(www.gov.kr) → 민원서비스 → 중앙민원」에서 민원서비스명 입력 후 발급	
민원우편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 후 신청(우편요금 발생)	
어디서나 민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신청 후 3시간 근무시간 내 발급)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 가입 의무 대상자

-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 가입 기한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 31.
그 외 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매출 친 업종은 2019. 1. 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타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료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05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2019.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2017년 이전은 5백만원, 2012년 이전은 7백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납부 세액 한도)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건당 3만원(점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 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 126번)로 문의하세요.

06 | 부가가치세 안내



❖ 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 7. 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 7. 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다음 해 1. 1.부터 2. 1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일반과세자 <small>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small>	간이과세자 <small>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small>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제조업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매매업·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 1. ~ 12. 31.) 공급대가(매출액)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06 | 부가가치세 안내

✔ 신고·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 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 1. 1. ~ 6. 30.	1. 1. ~ 6. 30. 까지 사업 실적	7. 1. ~ 7. 25.
	제2기 7. 1. ~ 12. 31.	7. 1. ~ 12. 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 해 1. 1. ~ 1. 25.
간이과세자	1. 1. ~ 12. 31.	1. 1. ~ 12. 31. 까지 사업 실적	다음 해 1. 1. ~ 1. 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일반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 부진·조기 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 1. ~ 3. 31. 실적)	4. 1. ~ 4. 25.
		제2기 예정신고(7. 1. ~ 9. 30. 실적)	10. 1. ~ 10. 25.
간이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부과기간(1. 1. ~ 6. 30. 실적)	7. 1. ~ 7. 25.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세액} (\text{매출액} \times 10\%) - \text{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부가가치율} \times 10\% - \text{공제세액} (\text{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times \text{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 한함) * 2019. 7. 1.부터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 1. ~ 그다음 해 6. 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p>*2019. 1. 1.부터 시행</p>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06-1 |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
|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4. 작성 연월일 |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사업자 상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07 | 종합소득세 안내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2.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8년 소득 기준)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 (2018년 귀속 기준)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육탕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육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 요령 및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 하느냐”라며 불평합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제도

-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 1. 1. ~ 6. 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 ④)

07-1 |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 경비율의 적용 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①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②

>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

*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2018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 구분	직전 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 적용례 :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9년 5월(2018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합니다.



08 |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www.nts.go.kr



✔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 대상

-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 아래 가산세 대상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 제출 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가산세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해당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사업(봉사로 포함)·퇴직소득·종교인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 방법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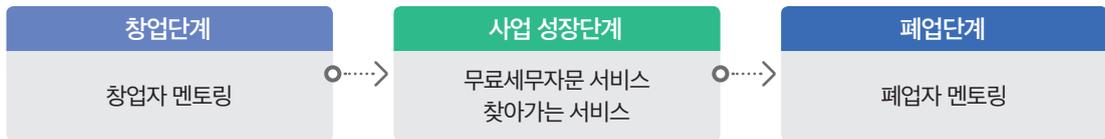
10 |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나눔세무·회계사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신청 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 126) → 3번으로)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창업자 멘토링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나눔세무·회계사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장애인 사업장 등 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폐업자 멘토링

-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 이후 나눔세무·회계사 지정일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7)

11 |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 사항

권리침해 유형		권리 구제
세무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반 국세행정	•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 요구 시정 명령
공통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 제공 요구	조사반(담당자) 교체, 징계 요구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 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 조사

-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12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www.nts.go.kr



☑ 납세자보호위원회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 심의 대상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p>가. 중소기업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p> <p>나. 중소기업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p> <p>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p> <p>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p> <p>마.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p>	<p>‘가~다’에 대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재심의</p>

* 중소기업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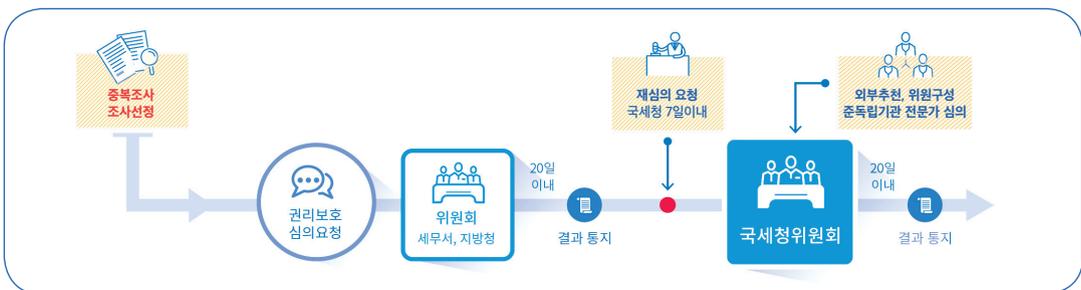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 심의 요청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결정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심의 절차



13 | 불복청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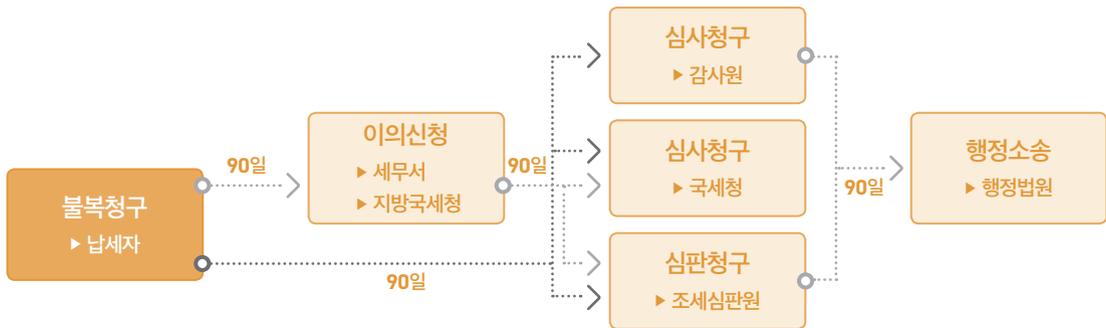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 처리 절차·작성 요령·서식 등 자세히 보기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 **국번 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 전화 소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됩니다.



14 |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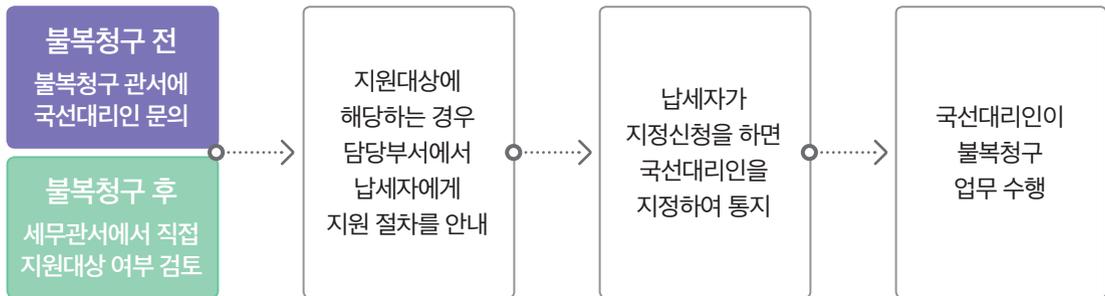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 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 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도움 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 126) → 3번으로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 ▶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세 부 내 용			
①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최대 지급액)	기준 금액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 지급액)	2,000만원 미만 (150만원)	3,000만원 미만 (260만원)	3,600만원 미만 (300만원)
②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 지급액)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2018. 6. 1. 현재) 				

- 사업자는 2018. 12. 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0. 1. 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하여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부양부모는 70세 이상 부 또는 모로서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여야 합니다.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5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법

-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의 소득 규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과 방법

구분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019. 5. 1. ~ 2019. 5. 31.	2019. 6. 1. ~ 2019. 12. 2.
신청 방법	ARS(☎ 1544-9944) 모바일 홈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 서면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 감액

✔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 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유의할 사항

-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 ▶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됩니다.
 -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됩니다.
- 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

01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 ▶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됩니다.

02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03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소매업을 2018. 8. 31.에 폐업한 경우 소득 등 신청 요건 충족 시 2019년 신청 가능

04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신청자가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05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 1. ~ 5. 31.까지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 대상 업종 : 음식점, 아·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 중 한 곳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인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은 5명 이상> * 산재보험은 별목적 제외	
부과소득 상한선	98,537,461원 (등급 없음)	4,680,000원 (등급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전액 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납부 방법	월납		월납(건설업 및 별목적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납부 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상담 전화	1577-1000	국번 없이 1355	국번 없이 1350(가입 문의 1588-0075)	1588-0075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90 ~ 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21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국가가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 근로자 취득신고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이 법정 신고기한보다 늦어질 경우 40%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 면 : 제출 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고용 창출장려금 안내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지원 유형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 교대제 도입 확대 2. 주근로시간 단축제 3. 실근로시간 단축제 4. 일자리 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 10만원~40만원 지원 ※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1인당 20명까지) [설비투자비 용자]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우선 지원 1%, 대규모 기업 2%)												
시간 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 대우(근로시간 비례 원칙) 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 관리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모든 기업</td> <td>180만원</td> <td>720만원</td> </tr> </tbody> </table> [간접노무비]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대상 중견 기업</td> <td>30만원</td> <td>120만원</td> </tr> </tbody> </table> ※ 초과 근로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출퇴근 기록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은 장려금 지급 제외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180만원	720만원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 중견 기업	30만원	120만원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180만원	720만원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지원대상 중견 기업	30만원	120만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 제조업으로 지정일 후 3년 이내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 기업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총 2년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 지원</td> <td>180만원</td> <td>1,440만원</td> </tr> <tr> <td>중견 기업</td> <td>90만원</td> <td>72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 지원	180만원	1,440만원	중견 기업	90만원	720만원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 지원	180만원	1,440만원												
중견 기업	90만원	720만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②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여 ③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④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 지원</td> <td>240만원</td> <td>960만원</td> </tr> <tr> <td>중견 기업</td> <td>120만원</td> <td>48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 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 기업	120만원	480만원			
구 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 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 기업	120만원	480만원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6개월 단위</th> <th>총 지원액</th> </tr> </thead> <tbody> <tr> <td>우선 지원</td> <td>360만원</td> <td>720만원</td> </tr> <tr> <td>대규모 기업</td> <td>180만원</td> <td>36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 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기업	180만원	360만원			
구 분	6개월 단위	총 지원액												
우선 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기업	180만원	360만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중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 :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

2019년 주요 세무 일지



월	일	일 정	비 고
1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18. 12월분(2018. 7~12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8. 12월분
	25	201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18. 7~12월분
	31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18. 1~6월분
2	11*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18년 귀속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19. 1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9. 1월분
	15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및 정기신고분 분납 기한	2018년도분
	28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8. 7~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 신고		2018. 1~12월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 기한		2018. 1~12월분	
	2018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18. 10~12월 지급분	
3	11*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2019. 2월분, 2018 연말정산분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한	2018. 1~12월분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18년 연말정산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9. 2월분	
4	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8. 1~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	2018 사업연도분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법인)	2018 사업연도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19. 3월분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9. 3월분
		2019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19. 1~3월 지급분
	25	2019.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19. 1~3월분
5	3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18. 1~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8. 1~12월분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8. 1~12월분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해외 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2018 사업연도분
		12월말 결산 성실신고 확인대상법인 해외부동산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2018 사업연도분
5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19. 4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9. 4월분
	31	2018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8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2018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선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 분할상환액)	2018년 귀속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8. 10~2019. 3월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	2018년도 귀속분
	해외부동산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개인)	2018년도 귀속분	
6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19. 5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9. 5월분
7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8년 귀속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2018년 귀속분
		해외부동산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2018년 귀속분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신고, 신청 등의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때는 공휴일·토요일의 다음 날이 기한임

월	일	일 정	비 고
7	1*	사업용계좌 신고	2018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해외금융계좌 신고	2018년 보유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 1~6. 30)	2019년 하반기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8. 4~2019. 3월분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 기한	2017년 귀속분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19. 6월분(2019. 1~6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9. 6월분
25	2019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19. 4~6월 지급분	
	2019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19. 1~6월 지급분	
	201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19. 1~6월분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2018년 귀속분	
8	1	2018년 종합·양도소득세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확정신고자)	2018년 귀속분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19. 7월분
9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9. 7월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18년 귀속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 1~6월분
	10	2018년 종합·양도소득세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의무상환액 결정 고지(기한 후 신고자)	2018년 귀속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19. 8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9. 8월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8. 21~9. 10)	2019년 상반기 소득분
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8. 7~2019. 6월분	
	2019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19년도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연(年)정산자 의무상환액 납부 기한	2017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2018년 귀속 정기신청분
10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19. 9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9. 9월분
	2019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19. 7~9월 지급분	
25	2019.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19. 7~9월분	
11	11*	원천세 신고 납부	2019. 10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9. 10월분
12	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2018년 귀속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19. 1~6월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9. 4~9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선납부 2회차 분납 기한(1년분 중 50% 분할상환액)	2018년 귀속분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19. 11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9. 11월분
	16*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 1~12. 15)	2019년도분
3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2019년 귀속 상반기 신청분	
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기한(2019. 12. 1~12. 31)	2020년 상반기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8. 10~2019. 9월분	
	12월말 결산법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2018 사업연도분	

세무상담 안내



· 전화 상담 이용 안내

- 개별납세자의 세무 관련 사항 : 관할세무서 담당자
- 홈택스 이용 및 세법령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 126 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 없이 ☎ 126 번								
1						2	3	4
1	2	3	4	5	6			
현금 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신고·납부, 증명 발급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증명 발급	세법 상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 고충 상담)	탈세 등 각종 제보

※ 상담 시간 :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



· 인터넷 이용 안내

-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 ※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 건의]는 홈페이지(국세청 ☞ 국민신문고 ☞ 고객소리)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6 ☞ 2번 ☞ 9번)로 전화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 전화 소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 영세납세자지원단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무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나눔세무·회계사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 126 ☞ 3번으로)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를 국세청의 최우선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